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1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 8. 2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 8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 9. 13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.12. 1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징수과장 주명식】

가. 제안이유

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5291호, 2017.12.26.공포, 2018.1.1.시행)됨에 따라,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,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·용어 정의, 법령 등과의 관계 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납세자보호관의 배치, 선발기준, 업무, 권한 (안 제4조부터 제7조)
-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 (안 제8조에서 제9조)

- 고충민원의 대상,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부터 제19조)
- 세무조사기간 연장·연기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부터 제23조)
- 권리보호요청 처리원칙, 대상,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부터 제28조)
- 납세자권리현장 제·개정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부터 제30조)
-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부터 제33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6조의 납세보호관 업무 중 고충민원 처리 등은 현재 세무분야의 전문 인력인 세무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고,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,
- 안 제5조의 선발기준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추가 선발하는 것은 추후에 인력수급 문제와 인건비 비용추계에 문제점이 예상 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해당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